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21
----------	---------

제안일자 : 2016년 9월 8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 1. 수정이유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 감면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를 감면대상자로 추가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감면대상자로 추가 신설(안 제34조제1항제9호).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4조제1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p> <p>제34조(감면) ① (생 략)</p> <p>1. ~ 9. (생 략)</p> <p>② ~ ⑤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부칙 신설&gt;</u></p>	<p>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p> <p>제34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9.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u>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p>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p> <p>제34조(감면) ① (개정안과 같음)</p> <p>1. ~ 8. (개정안과 같음)</p> <p>9. <u>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u></p> <p>10. (개정안 제9호와 같음)</p> <p>② ~ ⑤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분 업종	사용구분(m <sup>3</sup> )	연도별 단가(원/m <sup>3</sup> )		
		2017년	2018년	2019년부터
가정용	30이하	330	360	400
	30초과~50이하	770	850	930
	50초과	1,180	1,290	1,420
욕탕용	500이하	360	400	440
	500초과~2,000이하	450	500	550
	2,000초과	520	570	630
공공용	50이하	610	670	730
	50초과~300이하	970	1,060	1,170
	300초과	1,100	1,210	1,330
일반용	30이하	420	460	500
	30초과~50이하	830	910	1,000
	50초과~100이하	1,250	1,380	1,520
	100초과~200이하	1,510	1,660	1,830
	200초과~1,000이하	1,580	1,740	1,920
	1,000초과	1,670	1,840	2,030
유출지하수	m <sup>3</sup> 당	330	360	400

※ 비고

1. 매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요율로 날 수대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및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 해당업종
공공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공공용 해당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일반용 해당업종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b></p> <p>제34조(감면) ① (생략)</p> <p>1. ~ 8.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9. (생략)</p> <p>②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부칙 신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b></p> <p>제34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u>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u>부칙</u></p> <p><u>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p>